

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7. 2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분과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구분 삭제(안 제7조)
- 나.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- 다.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0조)
- 라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규정이 “임의규정”에서 “의무규정”으로 개정·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(안 제17조 ~ 제21조)

3. 근거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2. 5. 21 ~ 2012. 6. 9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법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(이하 “광역시 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”를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장 제목 중 “미관지구 안에서”를 “미관지구안에서의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및 본문 중 “미관지구 안에서”를 각각 “미관지구안에서의”로 하고, 같은조 본문 중 “광역시 조례”를 “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”로 하며, 같은조제3호 중 “아니되며”를 “안되며”로, 같은조제4호 중 “조경”을 “수목”으로, 같은조제5호 본문 및 나목 중 “진입”을 각각 “진·출입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11호 중 “진열대나”를 “진열대 설치나”로, “아니된다”를 “안된다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구청장”을 “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해당위원”을 “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1항제3호 중 “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이”를 “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”로 하며, 같은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위원장”을 “위원회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

은 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조제3항 중 “대항”을 “대행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“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”로 하고, 같은조제2항 중 “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은 2이상의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”를 “구성한다”로 하며, 같은조제3항 중 “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분과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5항 중 “이 경우 분과의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”를 “다만,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시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.

③ 간사는 서무를 담당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9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법 제113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”을 “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”로 하며, “1년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제17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
2.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
3.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
4.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
5.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자문

제18조(구성) ① 기획단은 단장, 단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며,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19조(기획단의 운영 등)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,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.

제20조(임용·복무 등) 전문위원의 임용·복무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제21조(자료제출 요구 등) 기획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법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(이하 “광역시 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)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한다)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별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</p> <p>제3조 (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) 광역시 조례 제37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·담장·대문·건물조경·옹벽·광고물·기타 시설물의 구조·형태·색채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-----</p> <p>제2조 (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)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미관지구안에서의 -----</p> <p>제3조 (미관지구안에서의 -----)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----- 미관지구안에서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3.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장은 블록(일반 벽돌을 포함한다)담장으로 하여서는 <u>아니되며</u>,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.3미터 미만의 수목담장(투시형 담장이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4.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<u>조경</u>을 식재하여야 하며, 미관도로(미관지구와 접한 주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변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바닥면과 같아야 하며, 부득이 바닥면과 달리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15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화단에 식재하는 수목은 건물과 조화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>5.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장 <u>진입로</u>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미관도로변에서 <u>진입</u>하는 지하주차장 <u>진입로</u>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다. (생략)</p>	<p>3. ----- ----- ----- <u>안되며</u>,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수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----- ----- <u>진·출입</u>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<u>진·출입</u> ----- ----- <u>진·출입</u> ----- -----.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7. ~ 10. (생략)</p> <p>11.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가로미관을 위하여 이동식 <u>진열대나</u> 상품진열을 하여서는 <u>아니 된다.</u></p> <p>제4조 (적용의 완화) 제3조의 적용이 미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<u>구청장</u>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중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의2(해촉 및 직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<u>해당위원</u>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, <u>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이</u>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② <u>부위원장은 위원장</u>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<u>대행</u>한다.</p>	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<u>진열대 설치나</u> ----- ----- <u>안된다.</u></p> <p>제4조 (적용의 완화) ----- ----- ----- <u>울산광역시중구청장</u> <u>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제5조의2(해촉 및 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</u>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품위 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</u> -----</p> <p>② <u>위원회 부위원장(이하 "부위원장"이라 한다)</u>은 <u>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행</u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제1분과위원회</p> <p>가. 영 제11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</p> <p>나. 광역시 조례 제34조, 제35조에 따른 미관지구 관련 사항</p> <p>다. 「도시계획 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」 제12조 제3항에 따른 도로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</p> <p>2. 제2분과위원회</p> <p>가. 법 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</p> <p>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8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은 2 이상의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분과위원회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구성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<u>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</u>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 <u>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9조(회의의 비공개 등)</u>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특정한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<u>당해</u>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③ <u>분과위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-----.</u></p> <p><u>제7조의2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.</u></p> <p><u>③ 간사는 서무를 담당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</u></p> <p><u>제9조(회의의 비공개 등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회의록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113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10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-----</u> ----- <u>6개월</u>----- -----.</p> <p>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</p> <p>제17조(설치 및 기능) ① <u>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둔다.</u></p> <p>② <u>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u>1.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</u><u>2.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</u><u>3.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</u><u>4.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</u><u>5.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자문</u>

현행	개정안
	<p>제18조(구성) ① 기획단은 단장, 단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문위원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며,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들 수 있다.</p> <p>제19조(기획단의 운영 등)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,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단장 및 전문위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임용·복무 등) 전문위원의 임용·복무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.</p> <p>제21조(자료제출 요구 등) 기획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15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2. 7. 2.(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 : 2012. 7. 4.(수)
- 위원회 심사 : 2012. 7. 24.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분과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구분 삭제(안 제7조)
-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-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0조)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규정이 “임의규정”에서 “의무규정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(안 제17조~제21조)

4. 검토보고(전문위원 노용주)

- 제7조의2제2항 중 “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.”에서 “주사”라는 용어는 ○○○주무관이나, 지방행정주사

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함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수정사유 : 제7조의2제2항 중 “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” 중 주사는 현재 주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함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의2(간사 및 서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(생략)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<u>주사</u>가 된다.③ (생략)	<p>제7조의2(간사 및 서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(생략)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<u>주무관</u>이 된다.③ (생략)